

과징금납부통지서

(수납기관 보관용)

①발행번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반일자		
④위반행위		
⑤납부금액		
⑥납부기한		
⑦수납기관		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4항·제9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·제9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·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국토지리정보원장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[인] 수납인		

과징금영수필통지서

(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보관용)

①발행번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반일자		
④위반행위		
⑤납부금액		
⑥납부기한		
⑦수납기관		
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국토지리정보원장 시·도지사 대도시 시장 귀하 수납인		

과징금납부영수증

(납부자 보관용)

①발행번호		
② 납 부 자	상호(명칭)	
	대표자 성명	
	주 소	
③위반일자		
④위반행위		
⑤납부금액		
⑥납부기한		
⑦수납기관		
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국토지리정보원장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[인] 수납인		